

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2033690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203369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가합10047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장영재, 남미영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민

변론 종결 2019. 12. 12.

판결 선고 2020. 1. 16.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가합1004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9. 22.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175,000원과 이에 대한 2015. 9. 22.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들고 있는 사정과 증거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주위적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제외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재호

판사이혁

판사곽윤경